

전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나43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나430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가소3487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이창현, 한지영

변론 종결2020. 5. 13.

판결 선고2020. 6. 3.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가소3487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20.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6,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C 토미-프리마 23톤 카고	D 모닝
일 시	2017. 9. 9. 04:21경
장 소	김제시 금구면 소재 호남고속도로상 천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 편도 2차로 도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

나.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E)에게 보험금 9,732,22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8. 6. 18.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20(원고 차량) : 80(피고 차량)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1,946,440원(= 보험금 지급액 9,732,220원 × 20%,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도록 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7. 10. 피고에게 위 1,946,440원을 지급하고, 다음날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과 같은 20(원고 차량) : 80(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다툼다.

나. 판단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가해 차량 운전자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이것이 약물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정상적인 차선변경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과실비율을 30(피해 차량) : 70(가해 차량)으로 본다(을 제2호증).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인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도 않은 채 1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연이어 갓길로 빠지려는 듯한 모양새로 급격히 차선변경을 한 것인데다가(갑 제1호증),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수면제 4알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7호증), 이러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이미 불상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1차로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속도를 줄이면서(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 차량 앞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있었는바(갑 제1호증),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충분한 감속을 하거나 피고 차량을 인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10(원고 차량) : 90(피고 차량)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선지급함으로써 원고를 공동면책되게 한 피고에게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973,220원(= 9,732,220원 × 10%, 원 이하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1,946,4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 중 973,220원(= 1,946,440원 - 973,22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973,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값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구상금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1,946,4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다음날인 2018.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청구는 구상금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다음날, 즉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나상훈

판사오창민

판사조지환